

근대 중국 영화제작사의 지배구조와 운영*

－‘실업부(实业部)’와 ‘경제부(经济部)’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이 호 현**

- I. 서 론
- II. 중국 영화제작사의 등기상황
- III. 유한, 무한, 양합회사형 영화제작사의 운영
- IV. 주식회사형 영화제작사의 지배구조와 운영
- V. 결 론

• 국문초록

근대 중국기업의 성장, 변화가 중국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쪽에서는 이 주제가 잘 다루지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료적 한계로 기존의 연구보다 진전된 성과물을 내기 어려운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본 고에서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대만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 소장된 영화제작사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중화민국시기 영화제작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이 어떠한지 분석해 보았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3S1A5B8A01053894)

** 성균관대 현대중국연구소

그 중에서 관심을 갖은 부분은 각 영화제작사의 장정(章程)으로 특히 지배구조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주목하였고 기업의 지속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관리(官利), 기타 법적공적금 적립등의 문제를 이윤결산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관련해선 유한, 무한, 양합회사인 경우 회사속성상 관련규정이 없거나 내용이 상당히 소략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보유에 따른 제한 혹은 특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식보유수에 따라 표결권의 축소나 일정 주식보유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사, 감사의 피선거권자격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별의결권에도 불구하고 창립자나 발기인, 대주주가 대부분 이어나 감사, 경리(운영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제한은 매우 미약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연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였다. 둘째, 법적공적금인 이윤의 10% 이상을 모든 회사에서 이윤배분 항목으로 설정해 놓았고 특별공적금을 따로 적립해 두는 회사도 있었다. 이는 관리(官利)의 존재가 거의 폐지된 상황에서(전체 분석대상 회사 중 한곳만 규정) 회사의 영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많은 회사에서 직원복리금을 5-10%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1/3이상), 이는 공식적인 회사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복리금지불이 드물지 않은 상황임을 말해 준다. 결국 이러한 이윤결산방식은 중화민국시기 중국 회사조직의 ‘제도적 근대화’ 추세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주제어

영화제작사, 지배구조, 주주, 등기, 법적공적금

I. 서론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중국 성장은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발걸음을 맞춘 결과였으며, 때문에 경제적 동력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대변되는 중국 기업의 특성은 서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국적 색채를 띠는 것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역사분야에서도 기업연구들이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 왔다. 초기 연구의 주관심 대상은 중화민국시기 몇 몇 대기업이었다.¹⁾ 최근에는 명청 시기부터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시기까지 그 연관성을 다루며 전통문화의 영향, 사회구조나 권력관계 속 기업을 다루기도 하고 관심대상 밖이었던 개별 기업으로 1920년대 봉천방사창을 중심으로 전통적 합과관행과 근대 기업운영의 차이점을 밝혀낸 실증적 연구도 이루어졌다.²⁾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연구는 역사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기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료발굴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고에서는 기존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대만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 소장된 영화제작사 등기기록을 중심으

-
- 1) 역사분야 기존연구에 대한 동향은 장윤미의 논문을 참조할 만하다. 그녀는 역사학 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정치학쪽 연구까지 정리하며, 특히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연구동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윤미, 「중국 기업연구의 동향과 쟁점」, 『중국학연구』 56, 중국학연구회, 2011.)
 - 2) 전인갑, 「중국 근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합과 관행: 지연망의 ‘사회자본’화」,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전인갑, 「중국 근대기업과 전통적 전통적 상관행: 합과관행, 지연망 그리고 사회자본」, 『동양사학연구』 90, 동양사학회, 2005; 정지호, 「중국 합과의 현대사적 전개: 농업집단화운동, 향진기업, 대만방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45, 한국중국학회, 2002; 정지호, 「近代 中國 會社企業의 經營構造: 137개사 定款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65, 한국중국학회, 2012; 김희신, 「중국동북지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관행- 1920년대 봉천방사창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0,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4. Philip C.C.Hua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China’s Development Experience: The Role of Informal Economic Practices”, *Modern China* Vol. 37. No. 1, 2011, pp.3~43.

로 중화민국시기 영화제작사의 지배구조³⁾와 운영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산업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었다. 제작과 유통, 상영까지 철저히 대규모 자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한편 영화작품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를 홍보 혹은 비판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다. 때문에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 사회비판적 성향을 갖는 세력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중국 영화산업의 흥망은 중국 경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명청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화민국시기 192,30년대 호황을 누린 영화제작사의 운영은 어떠하였는가? 영화자체가 서구의 생산물이며 이를 제작하는 회사의 모델 또한 서구의 것을 가져 온 것으로 서구모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가? 중국적 요소는 배제되어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화제작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규정한 각 영화제작사의 (회사)장정에 주목하였다.

사실, 1904년 청조에 의해 「흙정대청상률 공사율(欽定大清商律 公司律)」이 제정된 이후 모든 회사는 관련 중앙부서에 등록을 해야만 했다. 등록된 자료의 일부가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 보존되어 있고, 현재 '실업부'와 '경제부'당안⁴⁾으로 총 50곳의 영화제작사 등기자

- 3)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사전적으로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 주주, 이사회, 경영자, 기타 이해관계자 -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매커니즘'으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좀더 협의의 정의로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것 또는 이를 행하는 기구'를 택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감사, 경영진 등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사실, 기업지배구조라는 개념은 1960년대의 미국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비인도적인 행동을 억제한다는 의미의 문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구조가 결국 장기적인 기업의 실적을 제고하여 기업의 장기 생존은 물론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4) 실업부 당안 내용은 크게 행정과 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에는 임간사(林墾司), 농업사(農業司), 공업사(工業司), 상업사(商業司), 광업사(鑛業司), 어목사(漁牧司)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 당안 내용도 크게 행정과 업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業務)에 경제부 소속의 공업사(工業司), 전업사

료가 보관되어 있다. 그 중 주식회사형 영화제작사가 24곳, 유한, 무한, 양합회사형 영화제작사가 12곳, 그리고 외국회사(외국영화제작사 중국지점)자료가 11곳 회사가 있다.⁵⁾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지배구조의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영화제작사의 개별 장정(章程) 속 내용 중 주주총회(股東會)와 이사회(董事會),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적 특성으로 외국 기업과 달리 회사의 연속성을 방해했던 것으로 알려진 ‘관리(官利)’⁶⁾의 존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윤결산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유형별 분석틀을 사용하였다.⁷⁾ 결국 이런 분석을 통해 지배구조의 주요한 대주주문제나 견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 그리고 중국적 특징이라 언급되는 ‘관리’의 존재 등을 살펴 근대 기업 지배구조와 운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電業司), 상업사(商業司), 기업사(企業司), 광업사(鑛業司), 자원위원회(資源委員會), 공광조정처(工礦調整處), 서창판사처(西昌辦事處) 등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다수 국영, 민영회사들의 기본자료도 보관하고 있다. 관련자료가 『경제당안함목편(經濟檔案函目編)』제1책,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출판부, 1987.와 제2책 1993.으로 출판되었다.

- 5) 총 50개 영화제작사 중 3개회사, 즉 대화전영사(大華電影社), 낙군영업고분유한공사(樂羣影業股份有限公司), 소주전영제작창(蘇州電影製作廠)는 본 고에서 원하는 장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자료의 근거가 되는 관장호(館藏號)는 모든 영화제작사에 기입하지 않고 각주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였다.
- 6) 관리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 여하를 막론하고 매년 주주에게 정액의 배당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배당률은 8%이상이었다. 관리를 지불한 뒤 만약 잉여가 있으면 다시 이익을 나누었다. 관리제도는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근대 중국사회경제구조의 환경조건, 중국 근대자본시장의 고리대금 성격과 중국의 오래된 상거래 관행 등을 통해 관리제도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는 장윤미, 앞의 논문, 주 26참조.
- 7) 각 장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시기적, 지역적 차이보다는 회사유형별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유형과 유한, 무한, 양합회사 유형별로 표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II. 중국 영화제작사의 동기상황

명청 시기 상업활동은 나름대로 규칙이 존재하였지만 근대법 차원의 법률도, 관련 부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된 청말, 청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근대적 경제를 담당할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 시초는 1903년(光緒 29년) 7월, 상부(商部)의 설치였다. 청조는 이를 근대 중국의 첫 번째 중앙정부 경제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삼았다. 이 후 1906년 공부(工部)를 상부에 병합시키고 농공상부라 개칭, 전체 농업, 공업, 상업 행정을 장악하는 최고 기구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1912년 남경임시정부는 농공상부를 실업부로 바꾸고 관할 범위를 확대해 농업, 공업, 상업, 광업, 어업, 산림업 및 도량형(度量衡) 등의 사무를 통괄케 했다. 실업부는 이후 국민정부가 중일 전쟁 전까지 경제를 주관하는 대표기구가 되었다.⁸⁾ 그러나 1938년, 국민정부가 전시체제를 실시, 실업부를 없애고 건설위원회와 합병하여 경제부를 설치, 그 직권과 조직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⁹⁾

한편 이러한 조직개편과 더불어 청조에 의한 근대 회사법[公司法]이 멸망직전 제정되었다. (『欽定大清商律 公司律』, 1904) 이 후 중화민국시기 동안 3차례의 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졌고¹⁰⁾ 이들 회사법에 의해 공식

8) 실업부에도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 본래 북양정부는 농공상부뿐만 따로 떼어 농림, 공상(工商), 두 부서로 분리하였고, 1913년 다시 농상부(農商部)로 합병하고, 이후 1927년 북경군정부(北京軍政府)가 다시 농상부분을 농공, 실업 두 부서로 나누었다. 그러나 남경국민정부 성립 후, 1928년 12월 행정원(行政院) 관할하에 농광(農礦), 공상(工商) 양부로 나누고, 1930년 12월 실업부로 다시 합병하였다.

9) 관련내용은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장(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藏)검색사이트(<http://archdtsu.mh.sinica.edu.tw/filekmc/ttsfile3?@11:2101738715:8:::002B17%20@@@424238335>, 2015.9.30.)인용.

10) 1914년 “公司條例”, 1929년 “中華民國公司法”, 1946년 “中華民國公司法”이 그것이다. 회사법 규정은 懷效鋒 編, 『清末法制變革史料』(下): 欽定大清商律, 公司律,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0;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 合肥: 黃山書社, 1999.

적으로 모든 회사는 앞서 언급한 국가 주관부서에 등록을 해야만 했다.¹¹⁾ 그 중에는 영화제작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초기 영화제작사들은 소규모자본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대형영화제작사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30년대에만 상해의 경우 48곳, 다른 지방은 광주 5, 남경 1, 사천 1곳의 제작사가 언급되고 있으며 당시 외국영화무역회사는 26곳이 기록되어 있다.¹²⁾ 본고는 당안관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근대적 형태의 주식회사형 영화제작사와 기타 유한, 무한, 양합회사형 영화제작사를 분류하여 표로 작성하였다.¹³⁾ 먼저, 규모나 소재지, 연도를 중심으로 그

참조. 회사법 변천과 성격에 관해서는 이호현·노은영 「중국 회사법의 변천과 근대성」, 『중국사연구』 92, 2013 참조.

- 11) 정확히 1904년 “공사율(公司律)”에는 ‘회사를 설립해 상부에 등록하려는 경우, 반드시 설립하려는 회사의 계약서, 회사장정 등을 모두 상부에 올려 등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14년 “공사조례(公司條例)”는 ‘회사는 본점에서 해당 관청에 등기한 후에야 창업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1장 총강5조(總綱 5條), 1929년 “중화민국공사법(中華民國公司法)”은 ‘회사는 본점에서 주관 부서에 등기한 후에야 설립할 수 있다’(2장 통칙 5조), 1946년 “중화민국공사법(中華民國公司法)”는 ‘회사는 본점에서 중앙 주관 부서에 등기한 후에야 설립할 수 있다’(2장 통칙 14조)로 규정하고 있다.
- 12) 程樹仁 編, 『中國電影年監 1934』, 中國廣播電視出版, 2008, pp.881~884, 955~956. 『중국전영연감(中國電影年監)』자료는 중화민국시기 영화관련 대표적 기본 자료이지만, 이 수치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등기기록 수치와는 다르다. 한편, 1930년대는 1920년대에 비하면 오히려 수치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었다. 『중국전영연감 1927』자료에 근거하면, “민국 십년 이래, 영화제작사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일시에 일어나”, “북경(北京) 2곳, 천진(天津) 4곳, 진강(鎮江) 1곳, 무석(無錫) 1곳, 항주(杭州) 3곳, 성도(成都) 1곳, 한구(漢口) 4곳, 하문(夏門) 1곳, 산두(汕頭) 1곳, 광주(廣州) 8곳, 홍콩(香港) 6곳, 구룡(九龍) 1곳, 상해(上海) 142곳” 등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와 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영화제작사 중에는 금방 생겨났다가 금방 문을 닫는 경우가 잦고, 설립한 후 한편도 제작하지 못한 영화제작사가 있는가 하면, 이미 문을 닫았는데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문을 닫은 이후 새롭게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화제작사가 합병하는 경우도 있어, 당시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180여 곳의 영화제작사가 존재하였고 그 중 130여개 영화제작사가 상해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3) 무한, 양합회사 형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회사로 규정되지 않아, 회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식회사형 영화제작사의 규모와 소재지¹⁴⁾

		(/)	
1	份	20 (2 /10)	1929
2	份	30 (3 /1)	1929
3	份	11 5 (1 1 5 / 100)	1930
4	份	5 (500 /100)	1934
5	份	10 (1 /100)	1935
6	份	50 (5 /100)	1935
7	份	6 (600 /100)	1936
8	份 (1)	4 (80 /50)	1936
8	份	10 (10 /1)	1947
10	份	3 5 2 (3 5 2 /1)	1947
11	份	5 (1 / 50)	1948
12	份	30 (300 /1)	1948
13	份	()1 (100 /100)	1948
14	份	5 (5 /1)	1948
15	份	() 2 2 (4 4 /50)	1928
16	份	5 (1 / 50)	1931
17	份 (2) ¹⁵⁾	10 (2 /50)	1936
18	份 (1)	10 (1 /100)	1936
19	份 (2)	5 (500/100)	1948
20	份	2 (2 /1)	1946
21	份	10 (1 /10)	1946
22	份	1 (1 /1)	1947
23	份	3 (3 /1)	1946
24	份	5 (5 /1)	1948

법 규정을 받지 않게 되었다. 회사유형에 따른 정의나 규정은 이호현·노은영, 『중국 회사법의 변천과 근대성』, 『중국사연구』 92, 2013 참조.

- 14) ① 연도는 자료에 기입된 날짜이며 실제 설립, 등기날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자본총액의 화폐단위는 국폐(國幣)이다. (우주전영기업고분유한공사

〈표 2〉 유한, 무한, 양합회사형 영화제작사 규모와 소재지⁶⁾

		(/1)	
1		4	1930
2		5	1931
3		3	1934
4		2	1937
5		20	1937
6		10	1947
7		2 (20 / 1)	1947
8	份	3 5 (35 /1)	1947
9		5	1948
10		2	1946
11		() 5	1948
12		2	1948

한편,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할리우드 영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메이저영화사 지점이 모두 중국으로 진출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으며 193,40년대에도 화려한 대도시 극장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¹⁷⁾ 때문에 중국 영화를 다룰 때 할리우드 영화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외국영화사 지점인 경우 중국내외 유통과 영화관

(宇宙電影企業股份有限公司), 익지고분유한공사(益智股份有限公司)만 예외) ③ 명칭이 동일한 두 회사는 자료에 기입된 연도와 영화소재지 자체가 다른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영화제작사로서 (1), (2) 로 구분하였다.

15) 장정상에서는 총자본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표에는 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17-23-01-13-30-006)

16) 주식회사와 달리 1고당 액수에 대한 규정이 2곳만 정해져 있다. 실재는 달리 운영될 수도 있다. 화폐단위는 중연영업유한공사(中聯影業有限公司)만 제외하고 모두 국폐이다.

17) 할리우드 영화와 관련해서 程孝華, 『中國電影發展史』, 中國電影出版社, 1981, pp.57~60; 上海電影志編纂委員會 編, 『上海電影志』,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9, pp.30~35; 李浩賢, 「1930年代 上海와 할리우드 映畫 -『申報 -電影專刊』 할리우드 映畫評과 ‘不怕死’案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76, 2012 참조.

상영관련업무를 보는 회사였고 본 고에서 다루는 회사장정 내용도 비교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아, 2장과 3장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영화사 진출을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1940년대 외국영화사 지점들의 규모와 소재지만을 표로 작성하였다.

〈표 3〉 외국영화제작사 분점의 규모와 회사형태

1	() 份	1		1946
2	() 份	10		1946
3	() 份	5		1946
4	()	2 (8 4)		1947
5	() 份	5		1947
6	() 份	350		1947
7	() 份	6		1947
8	() 份			1948
9	() 份	10 (13 9 8 6)		1947
10		5		1948
11		1 1		1948

당안관 자료에 근거해 작성한 표를 보면 첫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영화제작사가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 특히 상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¹⁸⁾ 또한 외국영화사 지점들도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¹⁹⁾

18) 당시 상해가 타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혼평(析平)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상해가 다른 대도시보다

둘째, 회사의 유형으로는 주식회사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유형으로 가장 근대적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다수(전체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청말 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중국 내에서도 회사조직이 서구와 같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²⁰⁾ 셋째, 기존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장정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바로 영화영업제편고분유한공사(聯華影業製片股份有限公司)(이하 연화공사(聯華公司)로 약칭)이다. 1930년대 대표적 영화제작사였던 나명우(羅明佑)의 연화공사는 지금까지 1937년 항전 시작과 함께 나명우 자신은 물론 영화제작사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다만, 연화공사에서 일하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1946년 6월 정군리(鄭君里), 맹군모(孟君謀) 등이 연화영업사(聯華影藝社)를 조직하였다. 당시 나명우 또한 “연화(聯華)”의 명의로 국민당측과 합작하여 다시 세력을 키우고자 하였으나, 연화동인의 지지와 협조를 얻지 못해 실패하였다. 특히 연화영업사는 이후 곤륜영업공사(崑崙影業公司)와 합병, 세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1930년대 영화전통을 이어받아 음한생(陰翰笙), 채초생(蔡楚生), 사동산(史東山), 진백진(陳白塵), 심부(沈浮) 등이 편집위원회 위원을 구성, 기존 영화사의 사회비판적 기풍을 이어가게 되었다.²¹⁾ 그런데 등기기록을 통해

훨씬 여유로웠음을 밝혀내고 있다. (析平, 『從上海發現歷史—現代化進程中的上海人及其社會生活(1927~1937)』, 上海人民出版社, 1996, 201~210쪽).

- 19) <표 3>에서는 상해, 천진 지역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자료 내용을 보면 두 지역 이외, 북평, 한구, 중경, 광주 이러한 지역들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
- 20) 다만 회사유형으로서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고, 등기를 할 의무가 없거나 고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반증자료로 제시하려면 좀 더 많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식회사 유형이 다수를 차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가 정부 주관부서에 등기를 하고 주식회사 유형이 점차 증대하는 ‘제도적 근대화’ 추세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1) 이러한 영화기풍은 곤륜영업공사(崑崙影業公司)와 관련이 있는, 문화영업공사(文華影業公司)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문화영업공사는 오성재(吳性裁)가 창립하였으며, 그는 1920년대 대표적 영화제작사였던 “대중화백합(大中華百合)”을 운영한 적이 있고, 나명우와 함께 “연화”에 참여한 적도 있었다. 중일전쟁 이후

나명우가 그들 본래 근거지였던 광주에서 새롭게 연화공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²⁾ 연화공사의 중국영화사에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후속작업이 이루어져 나명우와 함께 연화공사의 재평가 이루어진다면 영화제작사 연구에도 의미가 큰 성과물이 될 것이다.

Ⅲ. 유한, 무한, 양합회사형 영화제작사의 운영

1904년 “공사율(公司律)”이 제정된 이후, 소규모의 가족회사들이 우후죽순 설립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합과(合類)의 형태를 띠거나 회사인 경우도 무한회사 혹은 유한, 양합회사의 형태가 많았다. 아무래도 중국은 주권분산을 원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다. 당연 주주는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심이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이사나 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간단했다.²³⁾ 또한 회사 경영책임자인 경리(經理)선출도 창립자 중 중심인물이 직접 하거나 가족 중에서 선정되어 장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⁴⁾

나명우가 합작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1946년 8월말 吳性裁는 독자적으로 文華影業公司문화영업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는 이후 복평에 청화영업공사(淸華影業公司), 상해에 화예영편공사(華藝影片公司)도 설립하였다. 당시 문화영업공사 편집, 감독, 연기자 모두 항전시기 줄곧 상해에서 활동한 진보연극단체의 관계자들로 1930년대 인적 자원과 기풍이 상당부분 지속될 수 있었다. (程季華, 『中國電影史』 第2卷, 中國電影出版社, 2010, p.208, 255.)

- 22) 연화공사는 나명우 중심의 광주(廣州)지역이라는 지연을 기반으로 인적구성을 이룬 대표적 영화사였다.
- 23)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호영편양합공사(西湖影片兩合公司)인 경우 주주총회를 매월 한차례 개최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출을 규정해 놓고 있다. (17-23-01-13-30-007).
- 24) 오히려 생활비나 광고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주식회사와 달리 나타나는데 이는 회사특성상 주주가 대부분 가족, 친척, 지인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아 직접 운영에 필요한 경비절약의 내용으로 해석된다.

사실, 민영회사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관 주도로 관리나 관리와 인맥이 있는 인물이 경리를 맡아 운영되곤 했다. 예를 들어, 장건(張騫)이 주도한 대승사창(大勝紗廠)의 경우 1907년 제 1회 주주총회를 열기 전까지 이사회도 없었다. 최고 결정권자인 경리는 계속해서 장건이 담당했다. 그는 회사 내에서 ‘황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러한 관습은 한동안 이어져 예를 들어 1903~1907년 5년간 전국 15개성에 창립된 18곳의 철로회사 중 각 성의 총리(總理) 혹은 총판(總辦), 즉 책임자는 3개 노선회사만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고 기타 각 성의 관리나 신상(紳商) 등의 공거로 상부에서 주를 올려 파견되는 형태였다.²⁵⁾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민영회사는 자신들의 회사운영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그 중 무한회사였던 국태영업공사(國泰影業公司)(이하 ‘국태(國泰)’로 약칭)는 비교적 규모가 큰 민영회사로서,²⁶⁾ 1946년 7월 설립되었는데 설립자 유중량(柳中亮), 유중호(柳中浩) 형제는 본래 상해 “고도시기(孤島時期)”²⁷⁾ 영화관과 국태를 운영해서 큰돈을 번 인물들이었다. 그 후 태평양전쟁으로 일시 영업이 정지된 후, 1946년 다시 국태를 창립하였다. 당시 유중호가 ‘국태’영업을 맡고, 유중량은 따로이 대동전영기업공사(大同電影企業公司)도 설립했다.

이들 영화제작사는 운영방식에 있어 철저히 양면적이었다. 영화흥행을 위해 진보적 영화인들을 채용, 혹은 초빙하였고 국민당 인물들을 회사 간부로 기용하여 관료들과도 연계를 맺었다. 사실 국민당도 국민당 인물

25) 張忠民, 『艱難的變遷 -近代中國公司制度研究』,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2, pp.411~412.

26) <표 2> 6번항목의 국태영업무한공사(國泰影業無限公司) 자본총액(10억원)을 보면 다른 회사에 비해 월등하게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1937년 11월 12일 일본의 공격으로 상해가 점령당한 후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기를 말한다. 상해 점령 당시 공공조계의 소주하 이남 지역과 프랑스조계지역은 일본이 관할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계행정부(공부국과 공동국)가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 형상을 빗대어 ‘고도(孤島)’라고 칭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상해시민이 일본세력을 피해 조계지역으로 밀려들어 와 ‘기이한’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을 통해 진보적 영화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비단 영화제작사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지 않은 민영회사의 경우 드물지 않게 행해지던 방식이었다.²⁸⁾

그렇다면, 이러한 운영방식 이외 각 영화제작사들의 이윤분배를 통한 운영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官利는 여전히 존재하는가?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장치는 있었는가? 등기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유한, 무한, 양합회사형 영화제작사 결산방식

1	29)	30	30		23 7	10
2		10	40		10 20	20
3	30)	13	67		7 () 13	
4		20	70		8 12	10
5		10	60		20	20
6	31)	10	70		20 10	() 20
7		10	70	10	20	
8	份	10	70	2	25	3
9		10	70		30	
10	32)	10				
11		10	60	14	16	10
12		20	70		8 12	10

28) 程季華, 앞의 책, p.278. 楊勇은 자본력과 행정력의 줄다리기가 중화민국시기 줄곧 이어지고 있음을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다.(『近代中國公司治理思想研究』, 復旦大學經濟學院博士論文, 2005. 참조)

유한, 무한, 양합회사의 이윤결산방식은 각 항목을 설정해서 백분율로 나누어 배분하고 있다. 표를 보면, 먼저 관리(官利)가 존재하지만 한 곳에 불과했고, 영속성을 위한 장치로서 법정공적금을 10~30% 정해 놓았고³³⁾ 특별공적금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사와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윤에 따른 보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1/4만 존재) 발기인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직원장려금이란 항목(4곳, 1/3)도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전통적 방식의 관리(官利)의 폐해를 줄이고 회사의 존속이 나뉘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윤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주식회사형 영화제작사의 지배구조와 운영

회사법에 의해 중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관련부서 -실업부와 경제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을 해야만 했다. 각 회사마다, 시기마다 약간의 제출된 서류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 내용을 보면 등기표, 영화제작사 장정, 주주명단, 이사와 감사 명단 등이 제출되었고, 그 밖에 영업계획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중에서 각 영화제작사 장정은 회사유형, 영업내용, 자본총액, 주주총회와 이사회개최, 이윤 결산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

29) 법적공적금까지 전체를 백분율로 이윤을 나누었으며, 감사가 존재하지만 감사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17-23-01-13-30-007)

30) 법적공적금까지 포함하여 백분율이 아닌 전체를 15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17-23-01-72-30-020)

31) 법적공적금과 官利를 제외하고 백분율로 나누어 이윤을 배분하고 있다.(18-23-01-72-30-020)

32) 법적공적금 이외 별도의 항목이 이윤배분비율 없이 균등분배로 규정하고 있다.(18-23-01-72-30-041)

33) ‘중화민국공사법(中華民國公司法)’에는 10%로 법적공적금을 규정하고 있다.

어 지배구조를 살펴보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1. 주주총회와 이사회

먼저, 주주총회 내용을 정리하면, 주주의 자격,³⁴⁾ 권리, 이사회 감사
가 될 자격요건 및 회의개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매 1주식[股]는 결의권(표결권) 및 선거권 1권리(權利)를 갖는다. 그
러나 몇몇 회사들은 11股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결의권을 제
한(혹은 축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股 이상인 경우 2股에 대해 1결의
권을 주는 형식이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모든 주주가 이사회 감사
가 될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몇몇 회사에서는 주식보유수
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다. ③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로 나누어져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날짜 각 영화제작사마다 진
행되는 회의지만 임시총회의 경우는 이사회 혹은 일정 주식보유 이상인
주주가 제의하는 경우 개최된다. ④ 주주가 특별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인은 대
부분 영화제작사내 주주로 제한한 경우도 있으며 반드시 위탁서를 영화
제작사에 보관해야만한다. ⑤ 사안에 대한 의결방법은 과반수 주주의 출
석과 출석인 과반수찬성으로 진행된다. ⑥ 회의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하고 주석이 서명, 도장을 찍고 출석한 주주명부와 위탁명부도 함께
보관해 두었다.

한편 또 다른 주요 회의로서 이사회의 경우에도 ① 앞서 언급하였듯
이, 모든 주주가 이사회 감사의 자격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 보유
수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② 이사회 감사의 임기를 보면 대부분

34) 몇몇 영화제작사는 주주를 중화민국 국민으로 제한하거나, 주식 양도에 있어
중화민국 국민 혹은 동일 영화제작사 주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사는 3년이며 감사는 1년, 연임도 가능하다. ③ 이사장 1인을 선거로 뽑아 전체 사업계획과 회사업무를 맡은 경리를 감독하며 전체 업무를 관리케한다.³⁵⁾ ④ 이사는 직원과 겸임가능하지만 감사는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경리나 협리(協理)의 경우 이사회에 추천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직원들의 임면권(任免權)은 경리가 대부분 맡는다.³⁶⁾ ⑤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지며 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 중 주권행사 관련부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주식회사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장정〉

		(1)		, '
1	份	11 -8 ³⁷⁾	1/20 ³⁸⁾	20
2	份	1 - 1	1/20	25
3	份	1 - 1		20
4	份	11 -2 1		
5	份	11 -2 1		
6	份	11 -9		5 4
7	份	11 -8		
8	份 (1)	11 -9		
8	份	1 - 1		
10	份	11 -9		
11	份	1 - 1		
12	份	1 - 1		
13	份	1 - 1		
14	份	1 - 1		

35) 경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운영을 맡을 경리 혹은 총경리를 두고 이를 돕는 협리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 직원관련 규정은 자세하지 않다.

36) ‘중국식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현재 중국은 소유권 문제와 함께 인권문제가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37) 8절(折), 9절(折)는 11고(股) 이상 소유자가 보유수에 따라 20%, 10% 삭감됨을

15	份	11 -5 1		10 / 5
16	份	11 -2 1 50 -5 1 100 -10 1		3
17	份 (2)	1 - 1		
18	份 (1)	11 -5 1	1/2 ³⁹⁾	
19	份 (2)	11 -2 1 21 -3 1 31 -4 1 41 -5 1		
20	份	1 - 1		
21	份	11 -2 1	1/20	
22	份	11 -2 1	1/20	
23	份	1 - 1		
24	份	1 - 1		

2. 결산방식

중국 영화제작사는 이윤이 나지 않으면 이익을 나누지 않지만, 이윤이 난 경우 항목을 정해 배분비율을 장정 말미에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결산방식은 매년 1번 혹은 2번 실시하며 주주총회 30일 전 관련 서류를 갖추어 감사와 이사회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각 항목을 규정해서 이윤을 배분하는데 대부분 법적공적금 이윤의 10%를 제외한 부분을 백분율로 나누어⁴⁰⁾ 주주와 이사, 감사의 보수 그리고 경리를 비롯한 직원보수 등으로 이윤을 배분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의미한다.

38) 전체 주식의 1/20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경우 임시총회를 제외할 수 있다.

39) 장정상에는 1/2로 나와 있으나 다른 영화제작사와 비교할 때 1/20의 오타인 것으로 생각된다.(18-23-01-04-30-001)

40) 유한, 무한, 양합회사인 경우는 법적공적금을 별도로 제외하고 않고 백분율 항목에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다.

〈표 6〉 주식회사형 영화제작사 결산방식

				,		
1	份 41)	10	58	12	24	6
2	份 42)	20	58	8.4	12.5	8.4 4.3 8.4
3	份 43)	10				
4	份	10	70	20	10	
5	份	15	60	5	30	5
6	份 44)	10	62.5	12.5	12.5	12.5
7	份	10	65	7	24	4
8	份 (1)	10	70	10	20	
8	份	10	50	5	20	10 15
10	份	10	70	10	20	
11	份	10	55	10	30	5
12	份	10	70	10	20	
13	份	10	60	5	25	10
14	份	10	60	5	30	5
15	份 45)	10				
16	份 46)	10	70	30		
17	份 (2)	10	70	10	20	
18	份 (1)	20	60	10		30
19	份 (2)	10	50	5		30 10 5
20	份	10	50	5	20	15
21	份	10	60	10	20	10
22	份 47)	10				
23	份 48)	10				
24	份	10	50	5	35	5 5

위의 분석으로부터 첫째, <표5>를 통해 주식보유에 따른 제한 혹은 특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식보유수에 따른 표결권의 축소나 일정 주식보유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사, 감사의 피선거권자격 등이 주식보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주식보유에 따른 차별의결권은 대주주의 주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⁴⁹⁾ 그러나 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장정 내에 주주나 이사, 감사의 명단을 보면 창립자나 발기인, 대주주가 대부분 이어나 감사, 경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제한은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⁵⁰⁾ 또한, 경리에 대한 규정이나 명단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특별히 전문경영인 제도를 두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진 않았으며 대부분 이사,

-
- 41) 다른 영화제작사와 달리 법적공적금 (10)뿐만 아니라, 발기인(5), 직원배당(5)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를 17로 나누어 주주와 이사, 감사, 직원, 특별공적금을 배분하고 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였다.(17-23-01-72-30-008)
 - 42) 장정 상에는 법적공적금 이외 나머지 이윤을 백분율로 하지 않고 120로 나누어 배분하였다. 비교를 위해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이다.(17-23-01-72-30-010)
 - 43) 법적공적금 1/10을 제외한 이윤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이외 특정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18-23-01-74-30-002)
 - 44) 규정에는 법적공적금 1/10을 제외한 이윤을 16으로 나누어 비교하기 쉽게 백분율로 환산하였다.(17-23-01-72-30-021)
 - 45) 법적공적금 규정 이외 직원장려금이 전체 1/2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짓고 있다.
 - 46) 규정에는 이사와 감사가 경리보다 20% 적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7-23-01-73-30-002)
 - 47) 법적공적금 1/10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특정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18-23-01-23-30-001)
 - 48) 법적공적금 1/10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특정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49) ‘중화민국공사법(中國民國公司法)’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표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주주의 표결권 및 그 대리인으로 표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체 표결권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반면, 1929년 회사법에서는 ‘반드시 그 표결권을 제한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제한할 수도 있다’로 바뀌고, ‘1/5로 제한한다’라는 내용도 폐지되었다.
 - 50) 천일(天一)이나 대동(大同)의 경우는 소씨 집안과 유씨 집안이 이사, 감사를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기타 영화제작사들도 예외 없이 창립자, 발기인, 대주주가 이사, 감사직을 맡고 있다. 당연 현재와 같은 사외이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주 중에 결정된 듯하다.⁵¹⁾ 둘째, 이윤의 10%를 법적공적금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백분율로 나누어 70%정도를 주주들의 이윤으로, 10% 전후로 이어나 감사의 보수로, 그리고 20%를 직원 보수로 지불됨을 알 수 있다. 세째, 결산의 기타사항에서 지적된 직원복리금을 5-10% 책정한 회사가 전체 9개 회사로서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회사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복리금지불이 드물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유한, 무한, 양함 회사의 경우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합과형태에서 노동력에 따른 이윤배분이 이루어졌던 관습이 직원장려금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다.

V. 결 론

근대 중국기업의 성장, 변화가 중국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쪽에서는 이 주제가 잘 다루지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료적 한계로 기존의 연구보다 진전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본 고에서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대만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 소장된 영화제작사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중화민국시기 영화제작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이 어떠한지 분석해 보았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갖은 부분은 각 영화제작사의 장정(章程)으로 특히 지배구조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주목하였고 기업의 지속성에 불리한

51) 진정한 의미의 전문경영인제도는 중일전쟁이 끝나고 국민당 주도의 대규모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관료가 아닌 유학생들을 경리로 임명, 전문경영인을 기용하고 있다(張忠民, 『艱難的變遷 -近代中國公司制度研究』,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2, p.446).

요소로 작용한 관리(官利), 기타 법적공적금 적립등의 문제를 이윤결산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관련해선 유한, 무한, 양합회사인 경우 회사속성상 관련규정이 없거나 내용이 상당히 소략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보유에 따른 제한 혹은 특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식보유수에 따라 표결권의 축소나 일정 주식보유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사, 감사의 피선거권자격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별의결권에도 불구하고 창립자나 발기인, 대주주가 대부분 이어나 감사, 경리(운영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제한은 매우 미약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연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였다. 둘째, 법적공적금인 이윤의 10% 이상을 모든 회사에서 이윤배분 항목으로 설정해 놓았고 특별공적금을 따로 적립해 두는 회사도 있었다. 이는 관리(官利)의 존재가 거의 폐지된 상황에서(전체 분석대상 회사 중 한곳만 규정) 회사의 영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많은 회사에서 직원복리금을 5-10%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1/3이상), 이는 공식적인 회사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임에도 복리금지불이 드물지 않은 상황임을 말해 준다. 결국 이러한 이윤결산방식은 중화민국시기 중국 회사조직의 '제도적 근대화' 추세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좀 더 중화민국시기 중국적 특색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각 영화제작사별 사정을 좀 더 치밀하게 고찰하여 미묘한 차별성을 밝혀내고 아울러 타산업과 비교, 시대적 비교 등을 통한 비교 분석이 더 보충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후속작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자료>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實業部, 經濟部 檔案(‘電影’관련 公司登記
卷 47곳 公司資料).

<연구논저>

김희신, 「중국동북지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관행- 1920년대 봉천방사창
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0, 2014.

이호현·노은영, 「중국 회사법의 변천과 근대성」, 『중국사연구』 92, 2013.

장윤미, 「중국 기업연구의 동향과 쟁점」, 『중국학연구』 56, 2011.

전인갑, 「중국 근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합과 관행: 지연망의 ‘사회자본’화」,
『역사교육』 89, 2004)

_____, 「중국 근대기업과 전통적 전통적 상관행: 합고관행, 지연망 그리
고 사회자본」, 『동양사학연구』 90, 2005.

정지호, 「중국 합과의 현대사적 전개: 농업집단화운동, 향진기업, 대만방
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45, 2002.

_____, 「近代 中國 會社企業의 經營構造: 137개사 定款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65, 2012.

懷效鋒 編, 『清末法制變革史料』(下) -欽定大清商律, 公司律』, 中國政法大學
出版社, 2010.

蔡鴻源 主編, 『民國法規集成』, 合肥: 黃山書社, 1999.

程樹仁 編, 『中國電影年監 1934』, 中國廣播電視出版, 2008.

程孝華, 『中國電影發展史』, 中國電影出版社, 1981.

上海電影志編纂委員會 編, 『上海電影志』,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9.

杜雲之, 『中華民國電影史』(上), 臺北: 文建會, 1988.

張忠民, 『艱難的變遷 -近代中國公司制度研究』,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2.

張仲禮 主編, 『近代上海城市史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90.

熊月之 主編, 『上海通史8-民國經濟』, 上海人民出版社, 1999.

忻 平, 『從上海發現歷史-現代化進程中的上海人及其社會生活(1927-1937)』,
上海人民出版社, 1996.

楊 勇, 「近代中國公司治理思想研究」, 復旦大經濟學院博士論文, 2005.

C.C.Huang, Philip,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China’s
Development Experience: The Role of Informal Economic Practices”,
Modern China Vol. 37 No.1, 2011.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Operation of Film Corporation in Modern China

— With Focus on the Registration Records of the
Ministry of Basic Industries and of Economic Affairs —

Lee, Ho Hyeon*

Despi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and the changes of enterprises in modern China and the nation's modernization, it has not been closely examined in earnes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studies. One of the possible factors, among many others, would be the lack of materials as it is hard to make an advance in academic studies without them. With a view to offer basic material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area,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 of film corpo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1912-1949) based on their registration records, which are the collection at the Academia Sinica in Taiwan.

This study has focused largely on the company regulations of film producers - i.e.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meetings of the boards of directors as corporate governance. It has also examined the *guanli* (官利) system - which hamp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pani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profits. With regard to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meetings of the boards of directors, the study has found that related regulations were non-existent or small in number in case of *youxiangongsi* (有限公司), *wuxiangongsi* (無限公

* Sungkyunkwan University China Research Institute

司), and *lianghegongsi* (兩合公司) and either limitations or preferential treatment related to stock holding existed in case of stock companies. The aspects of reduction in voting rights, certain shareholders' rights to convene extraordinary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right or eligibility for election of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or auditors diffe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ocks held by shareholders. Despite the discrimination in voting rights, the founder, the projector, and major shareholders were in charge of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auditors, or chief accountants. So it was difficult to considerably limit the rights of large shareholders and therefor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was not made.

Second, 10 percent of profits, or legal common reserve funds, were set in the category of profit distribution in all companies and some companies saved special common reserve funds separately. This shows that film companies systematically provided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guarantee their sustainability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guanli system* had almost been abolished (except one among all the target companies for analysis). Third, many film companies set funds for the well-being of employees by 5 to 10 percent (more than one thirds). This shows that the payment of funds for well-being was not uncommon despite their official non-existence in the corporate law. After all, this settlement system for profits fully reflects the trend of the systematic modernization of the corpo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Key words: Film Corporation,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s, registration, legal common reserve
funds

필자 E-Mail: 22hyeon@hanmail.net

투고일: 2015년 9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0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30일